



2022 회계연도 과천시 통합결산
결산검사 의견서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회

2022 회계연도 과천시 통합결산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과천시장

2022 회계연도 과천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 4. 24. - 5. 13.(20일)

○ 감사위원

- 대표감사위원 : 우윤화(과천시의회 의원)
- 감 사 위 원 : 송새근(광인회계사)
- 건 사 위 원 : 안 영(공인회계사)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회

목 차

I. 감사외견서	1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과천시 재정 현황	2
2. 세입 · 세출결산	3
3. 기금의 결산	16
4. 재무제표의 결산	17
5. 성과보고서	19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0
III.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2
IV.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용	36

I. 감사외전서

과 천 시 장 귀 하

2023년 5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 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로부터 과천시 2022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24일부터 2023년 5월 1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과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와 과천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정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과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재속비, 담세이월비 및 차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재건 및 재무의 결산, 기금, 공용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결산 감사 위원

대표위원	유 윤 화	
감사위원	송 재 근	
감사위원	안 영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과천시 재정 현황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세	세 입 (수 입)	1,359,482	1,301,178	1,052,755
	세 출 (지 출)	759,493	819,590	552,323
	결 산 상 잉 여 금	599,988	481,588	500,431
일 반 회 계	세 입	432,793	547,788	563,976
	세 출	347,372	444,082	412,913
	결 산 상 잉 여 금	85,421	103,706	151,063
특 별 회 계	세 입	680,783	461,484	141,302
	세 출	403,610	351,058	120,746
	결 산 상 잉 여 금	277,173	110,426	20,556
기 금	세 입	245,906	291,906	347,477
	세 출	8,511	23,850	18,664
	결 산 상 잉 여 금	237,394	268,056	328,812

기금을 포함한 23개 전제 회계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과천시 세입 규모는 1,052,755백만원으로 2021년 대비 248,42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상·하세출을 감안수(78,137명: 2022. 12. 31. 현재)로 나눈 ‘1인당 세입 규모’는 5,284천원, 지방세 실제 수납액(152,319백만원)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1,949천원임.

결산상 잉여금 500,431백만원은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151,063백만원,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20,556백만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328,812만원의 합계액임.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 88,057백만원, 모조금 반환금 5,452백만원 및 순세적잉여금 57,554백만원임.

2. 세입·세출결산

(1) 총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C=A-B)
합 계	677,579	705,273	553,550	151,619
일반회계	540,881	563,975	422,913	141,062
특별회계	136,698	141,302	130,646	10,656
공기업특별회계	131,927	134,398	113,445	20,953
상수도	12,397	9,064	5,934	3,130
하수도	9,537	9,483	9,283	2,207
지식정보타운	109,933	112,845	102,230	10,615
기타특별회계	4,771	6,904	4,301	2,603
재산소득	106	236	22	213
영양급여	440	440	419	21
도시주차장	4,255	6,229	3,800	2,369

회 계 별	원년도 채무상환	이 원 액 (D)				
		명시	사고	계속배	보조금 반납금	순세 잉여금
합 계	-	57,563	14,547	21,175	5,436	72,833
일반회계	-	53,246	14,197	20,613	5,452	57,554
특별회계	-	4,317	349	562	4	15,384
공기업특별회계	-	4,317	349	562	27	12,839
상수도	-	2,905	96	562	27	1,510
하수도	-	1,000	253	-	-	955
지식정보타운	-	412	-	-	-	10,503
기타특별회계	-	-	-	-	17	2,585
재산소득	-	-	-	-	-	213
영양급여	-	-	-	-	17	3
도시주차장	-	-	-	-	-	2,36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5,27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77,579백만원보다 27,699백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8%인 533,660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 결산상 잉여금은 171,619백만원임.

이 중 명시이월액 57,563백만원, 사고이월액 14,347백만원 및 계속미이월액 21,175백만원과 모조금 만납금 5,496백만원을 합제한 순세제잉여금은 72,838백만원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비수납액
결 산 액	540,881	575,585	563,976	323	11,285
결 산 확 인 액	540,881	575,585	563,976	323	11,285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은 563,97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27%로서 23,095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63,976,096,300	563,976,096,300	-

일반회계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0 2 2	540,881	575,585	563,976	323	11,285
2 0 2 1	541,580	555,501	547,768	484	7,330
총 계	△699	19,984	16,188	△161	3,955

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021년과 비슷한 98%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3% 증가(16,188백만원)로 563,97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미수납액의 경우 전년도 7,330백만원보다 3,955백만원이 증가한 11,285백만원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40,881	575,585	563,976	323	11,285
시 향 세	140,950	162,357	152,319	254	9,784
세 외 수 입	28,819	32,023	30,453	69	1,501
지 방 교 부 세	33,143	35,239	35,239	-	-
조성교부금등	68,480	76,214	76,214	-	-
보 조 금	77,816	77,796	77,796	-	-
보 건 수 입 등 및 내부거래	191,667	191,950	191,956	-	-

과목별로 세입결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7%인 152,319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4%인 30,453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6.2%인 35,239백만원, 조성교부금등은 13.5%인 76,214백만원, 보조금은 13.8%인 77,79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과 계 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분류액
결 산 액	484,274	540,881	412,913	88,057	39,911
결 산 과 인 액	484,274	540,881	412,913	88,057	39,911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일반회계 예산액은 484,274백만원이며 전년도에서 56,607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40,881백만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3%인 412,913백만원임.

이월액은 88,057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경우 '성과관리 운영' 등 58건 53,246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체육시설 조성' 등 21건 14,197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시립노양원 건립' 등 7건 20,613백만원임.

분류액은 예산현액의 7.4%인 39,911백만원이며, 주요사유는 보조금반납금 등 5,452백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34,459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12,913,167,277	412,913,167,277	-

일반회계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와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용·전용 및 이체

예산이용은 해당 내역이 없으며, ‘혁신권성’ 등 예산전용 총 32건 266백만원, ‘에너지관리 운영’ 등 예산이체 총 15건 2,17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지출

인건비 지출액은 48,224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문서비 지출액은 25,842백만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선비는 191,031백만원, 시설키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액 65,288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액 76,229백만원, 에너지 및 반취금 등에 6,300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다유연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다유연도 이월액은 88,057백만원으로, 병사이원 53,246백만원, 사고이원 14,197백만원, 계속키이월은 23,613백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등 5,45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7,554백만원으로 결산됨. 순세계잉여금 57,554백만원은 초과세입금 23,095백만원과 집행잔액 34,459백만원의 합임.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지출액	2022년				전년대비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44,682	540,881	412,913	100	76	△31,768	92.86
일반공공행정	79,218	124,553	116,142	28.1	93	36,924	146.61
공공질서및안전	3,885	12,389	10,887	2.6	88	7,001	280.23
교육	8,657	9,491	8,594	2.1	91	△73	99.16
문화및관광	17,472	30,299	25,474	6.2	84	8,002	145.80
환경	16,229	22,443	18,566	4.5	83	2,437	115.02
사회복지	91,701	139,522	102,342	24.8	73	10,641	111.60
보건	5,930	11,626	10,188	2.5	88	4,258	171.80
농림해양수산	3,867	7,244	4,402	1.1	61	535	113.8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756	7,963	7,095	1.7	89	△1,661	81.63
교통및물류	23,213	77,526	40,511	9.8	52	17,298	174.52
국토및지역개발	133,247	35,989	13,203	3.2	37	△120,044	9.91
예비타	-	2,035	-	-	-	-	-
기 다	52,497	59,800	55,409	13.4	93	2,912	105.55

일반회계 기능별 재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16,142백만원(28.1%), 사회복지 102,342백만원(24.8%) 등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부분은 공공질서및안전으로 10,887백만원(전년대비 280.23%)이고 감소폭이 가장 큰 부분은 국토및지역개발로 13,203백만원(전년대비 9.91%)인.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 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36,698	143,183	141,302	12	1,869
공기업특별회계	131,927	134,493	134,398	-	95
상 수 도	12,397	12,113	12,064	-	49
하 수 도	9,597	9,535	9,489	-	46
지식정보타운	109,933	112,845	112,845	-	-
기타특별회계	4,771	6,690	6,904	12	1,774
세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106	361	235	-	126
의료급여기금	440	440	440	-	-
도시주차상	4,225	7,889	6,229	12	1,648
결산확인액	136,698	143,183	141,302	12	1,869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은 141,302백만원으로, 전년 세입액 461,484백만원 대비 320,182백만원(69%) 감소. 차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식기반산업융자 택지 판매 수익의 감소가 주원인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141,302,145,996	141,302,145,996	-
공기업특별회계	134,398,351,860	134,398,351,860	-
기타특별회계	6,903,794,136	6,903,794,136	-

특별회계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분 용 액
합 계	134,389	136,698	120,746	5,228	10,724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9,693	131,927	116,445	5,228	10,255
상 수 도	11,446	12,397	6,934	3,563	1,901
하 수 도	9,120	9,597	7,282	1,253	1,063
지 식 정 보 타 인	109,127	109,933	102,230	412	7,291
기 타 특 별 회 계	4,696	4,771	4,301	-	469
저소수주민생활안정자금	106	106	22		84
의 료 급 여 기 금	440	440	419	-	20
도 시 주 자 장	4,150	4,225	3,860	-	365

○ 세출결산 개요

전년도이월액은 합한 예산현액은 136,698백만원이고 차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20,74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228백만원이며 분용액은 10,724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120,746,446,740	120,746,446,740	-
공기업특별회계	116,445,231,580	116,445,231,580	
기타특별회계	4,301,215,160	4,301,215,160	-

특별회계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4) 명사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일반회계 명사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명사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서명	세부사업	동계목			
합 계			53,246	14,197	20,513
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운영	포상금	40	-	-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원호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	-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원호지원	사무관리비	22	-	-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지분취득탁사업비	471	-	-
	과장 및 직제	행사운영비	160	-	-
	운동차량 보수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0	-	-
	탁배형 당구 복원 공사	시설비	107	-	-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210	-	-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1,802	102	-
경제과	행사 시설물 개선	시설비	-	77	-
	과전자정보보안내내 공공행사 전담	시설비	789	21	-
	공공차량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85	-	-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시설비	342	-	-
	공공정보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	4	-	-
	공공정보시스템 관리	통신재료비	38	-	-
안전리검계과	수상공위 재난피해 지원금	민간원지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2	-	-
	반년조구면지역지원사업	시설비	48	-	-
복지정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직수혜금	234	-	-
사회복지과	다함께 나눔사업 설치비	민간위탁금	20	-	-
	다함께 나눔사업 설치비	시설비	30	-	-
	미련이집 확충	민간위탁금	30	-	-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431	-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당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서명	세부사업	동계목			
사회복지과	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	18	-	-
	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금	120	-	-
	더불어집 확충	시설비	360	-	-
	더불어집 확충	기타자본이전	2,200	-	-
	국공립이린이집 확충 추가 지원	민간위탁금	240	-	-
	노인복지지원	시설비	-	45	-
	치매요양원 신집	시설비	4,172	-	15,046
	치매요양원 건립	감리비	-	-	2,000
	치매요양원 건립	시설부대비	-	5	35
	과천행복드림센터 신집	사무관리비	-	-	8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시설비	-	-	2,000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	-	56
	구원동 정계성모당 신축	시설비	-	420	-
	논현동 성제경도당 신축	감리비	-	10	-
	지식정보타운 노인복지센터 신집 (성원SOC 복귀화사업)	감시관동해내후· 자본리위탁사업비	360	-	-
환경위생과	어린이 유희차량 LPG 전환 지원	민간지원사업보조 (이전새워)	-	21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새워)	360	106	-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비	100	-	-
	여천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	-	-
	도시환경미화	연구용역비	50	-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1,202	-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비	1,202	-	-
공원농림과	체육공원 운영관리	시설비	1,544	-	-
	여꽃한 공원관리	시설비	70	-	-
	소규모 공원관리	시설비	-	955	-
	공원녹지조성	시설비	9,576	-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평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서명	세부사업	동계목			
공설농림과	공설농지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64	-	-
	공설농지정비(노기)	시설비	-	92	-
	국유재산 유지관리	시설비	207	-	-
	신림브프유시온명	사무관리비	-	25	-
	산림보호유지운영	시설비	511	-	-
	습지조성관리	시설비	458	-	-
	산림재해 대책비	시설비	971	-	-
안전총괄과	제년제해지방	연구용역비	-	37	-
	자연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학동보상금	21	-	-
	하천계보수	시설비	1,346	609	-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5,185	-	-
도시정책과	도시디지털 운영	연구용역비	281	-	-
도시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시설비	-	18	-
	화재종합센터조성	시설비	-	85	-
교통과	내공교통운영지원	심기전동제내후 경상서위터사업비	143	-	-
	내공교통운영지원	시설비	80	-	-
	지상버스 구입비 지원	유수여계보조금	32	-	-
	교통안전시설물 노상	시설비	210	-	-
	스마트 교통 운영	연구용역비	-	184	-
	스마트 교통 운영	시설비	10	-	-
	무인교통단속장치 등 설치사업	시설비	16	-	-
	주차장 확충	시설비	5,640	19	-
	가로등 전기자 납속충전기 설치	시설비	120	-	-
	도로지원금 정비	시설비	913	1,265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당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동 계 목			
권 선 과	기전지선(도로) 정비	시설비	8,659	2,313	-
	강남순환노선전축화도로	시설비	-	-	1,468
	일동주매 전선주 지중화	시설비	2,400	-	-
	남동주매 전선주 지중화	인건취합비	-	7,789	-
보건행정과	주민건강증진	연구용역비	18	-	-
정보과학도시과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80	-	-

특별회계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회 계 명	세 부 사 업	동 계 목			
합 계			4,317	349	562
상수도사업	유형자산취득(구축분회)	재료비	2,905	51	-
	기타 자본적지출	시설부대비	-	-	562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연구용역비	-	37	-
	기공경비	일반유형비	-	9	-
하수도사업	하수시설 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	연구용역비	-	253	-
	하수시설 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1,000	-	-
지식정보타운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412	-	-

3. 기금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68,235	60,578	79,242	18,664	328,812
농업생산안전화기금(농안계정)	116,272	66,809	68,259	1,449	183,081
농업생산안전화기금 (새생안·청호계정)	35,855	△15,742	258	16,900	20,113
국전복제지 설비기금	15,235	△191	166	358	15,044
지옥전충기금	2,150	△26	24	49	2,125
일자리기금	10,097	97	115	18	10,195
공공부조기금	3,918	△9	72	80	3,009
사회복지기금	11,201	△174	122	296	11,029
양심평등기금	3,074	△11	33	45	3,063
교육발전기금	25,252	△38	276	314	25,214
메기농촌복지실행지킴이기금	20,262	201	201	-	20,463
식품진흥기금	8	6	8	2	14
제민관니기금	2,449	822	861	40	3,271
도시및농촌환경정비기금	5,612	49	49	-	5,660
무외광고반전기금	277	91	105	15	367
지역발전기금	17,452	192	192	-	17,644
라천시장부과저장식유주지 확보및활용기금	-	8,502	8,502	-	8,502

2022회계연도말 기금은 16종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8,81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68,235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9,242백만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8,664백만원을 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8,812백만원임.

2022년도 기금 사용액은 18,664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4. 재무제표의 결산

2022회계연도 과천시외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384,754	2,304,367	80,387	3.49
I. 유 동 자 산	473,300	430,589	42,712	9.92
II. 무 자 자 산	192,101	193,585	(1,484)	(0.77)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93,447	195,470	(2,023)	(1.04)
IV. 주 민 권 의 시 설	602,758	588,202	34,556	5.89
V. 사 회 기 반 시 설	914,863	909,710	5,153	0.56
VI. 기 타 비 유 형 자 산	8,285	6,721	1,564	23.27
부 채	32,355	29,231	3,124	10.69
I. 유 동 부 채	6,138	12,225	(6,089)	(49.8)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 타 비 유 형 부 채	26,219	17,006	9,213	54.18
순 자 산	2,352,399	2,275,135	77,264	3.40
I. 고 정 순 자 산	1,777,610	1,678,793	98,817	5.89
II. 특 정 순 자 산	148,839	153,539	(4,700)	(3.13)
III. 일 반 순 자 산	425,950	442,803	(16,853)	(3.79)

2022회계연도 말 과천시의 자산은 전년도와 2조 3,847억원으로 전년도와 2조 3,043억원보다 8,038억원(3.4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2022회계연도 말 과천시의 부채는 323억원으로 전년도와 292억원보다 31억원(10.69%)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기 (가 - 나)	170,705	77,586	93,119	120.02%
가. 사업총원기	279,093	337,153	(58,070)	(17.22%)
나. 사업수익	108,387	259,578	(151,191)	(58.24%)
II. 관리운영비	69,328	56,965	12,363	21.70%
III. 배분비용	13,089	10,503	2,596	24.72%
IV. 배분수익	14,738	12,842	1,896	14.76%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38,394	132,212	106,182	80.31%
VI. 일반수익	284,383	233,979	50,404	21.54%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45,989)	(101,767)	55,778	(54.81%)

과천시외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791억원에서 사업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084억원은 차감된 1,707억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436억원), ‘일반공공행정’ (311억원)과 ‘교통및동류’ (290억원)임.

또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18억원과 정비 7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분비용은 운영비 24억원과 기타비용 10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분분수익은 자채소달수익 143억원, 기타수익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운영결과는 (-)460억원으로 전년도에 (-)1,018억원보다 558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순원가 931억원 증가, 배분비용 26억원 증가, 배분분수익 1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5. 성과보고서

과천시에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 전략목표(27개) - 정책사업목표(50개) - 지표수(11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실국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총	24	50	117	16	71	26
의회사무과	1	1	2	0	2	0
기획감사담당과	1	1	5	0	5	0
자치행정과	1	3	8	3	2	3
문화체육과	1	5	10	3	5	2
외세과	1	2	6	1	4	1
사무과	1	1	3	0	1	2
일련민원과	-	2	4	0	3	1
정보통신과	1	1	3	1	2	0
인자리생세과	1	3	6	0	5	1
복지정책과	1	4	8	0	6	2
사회복지과	1	4	9	1	6	2
교육청소년과	1	2	5	0	4	1
환경위생과	1	6	12	3	4	5
공원농업과	1	3	6	1	4	1
안전총괄과	1	2	6	1	5	0
도시계획과	1	1	2	1	1	0
도시개발과	1	1	1	0	0	1
도시생태과	1	1	2	1	0	1
교통과	1	1	4	0	3	1
건설과	1	1	3	0	2	1
건축과	1	2	4	1	2	1
보건행정과	1	1	3	0	1	2
질병관리과	1	1	3	0	3	0
생태과학도시관	1	1	2	1	1	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단위 : 백만원)

과 계 별		전년도발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발 현 재 액
합 계		3,456	64	21	3,499
일반회계		3,207	53	10	3,250
특별회계		249	11	11	249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	-	-
	성수도	-	-	-	-
	하수도	-	-	-	-
	시식정보타운	-	-	-	-
	기타특별회계	249	11	11	249
	저조각	249	11	11	249
	의료보호	-	-	-	-
	도시주차장	-	-	-	-
	기금	-	-	-	-
기금	농림관리기금	-	-	-	-
	제정안정회계기금	-	-	-	-
	과천죽지육성기금	-	-	-	-
	체육진흥기금	-	-	-	-
	인자리기금	-	-	-	-
	공공부조기금	-	-	-	-
	사회복지기금	-	-	-	-
	양성평등기금	-	-	-	-
	교육발전기금	-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	-	-
	식물친환경기금	-	-	-	-
	재난관리기금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
	독의광고민천기금	-	-	-	-
	지역발전기금	-	-	-	-
	청시유혹사회복지통합기금	-	-	-	-

채권의 당해연도발 현재액은 3,49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250백만원, 특별회계 249백만원임.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원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원 재 액
			증	감	
합 계		1,569,949	106,307	29,062	1,647,594
행정재산	소 계	1,564,070	55,624	28,623	1,591,072
	방 용 계 속	212,385	2,214	4,753	209,836
	공 공 용 지 산	1,312,061	53,410	23,860	1,341,634
	기 위 용 지 산	39,335	-	-	39,335
	보 존 지 산	206	-	-	206
일 반 계 산		5,879	1,593	40	7,433
건 설 중 인 재 산			49,089		49,089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77,645백만원이 증가한 1,647,594백만원임.

주요 증가 내역은 소로3-210호선 등 주로 도로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및 제2선내체육관
선취사업 등 건설중인 재산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토지 합병감소, 면적변경 등임.

(지속면적 68건, 용도폐지 8건은 증·감 내역에 중복 포함)

(4) 물품

물품 전산액은 신규취득 124백만원과 매각 등 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백만원 증가한
11,696백만원이 당해연도말 원재액으로 확인됨.

Ⅲ. 결산검사 기선 및 권고사항

- 목 록 -

1.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 필요(기획홍보담당관, 세무과)
2. 이월사업 최소화 권고(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3.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열린민원과, 복지정책과)
4. 민간보조금 관리
 - (1) 과천시 민간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필요(기획홍보담당관)
 - (2) 중요재산의 관리(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 (3) 보조사업 공보 관리 및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중(기획홍보담당관)
 - (4) 보조금 성과평가 보완(기획홍보담당관)
 - (5) 보조금 지출관리(기획홍보담당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 (6) 자기부담금(자부담)의 관리(자치행정과)
 - (7) 기타사항(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5. 민간위탁금 관리
 - (1) 수탁자 의무 관리(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 (2) 민간위탁 성과평가(자치행정과)

1.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 필요(기획홍보담당관, 세무과)

□ 현 황

- 당해연도 인민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7,5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9%배민원 증가하였으며, 당세 수입 대비 10.2%, 세출 대비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입	세출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비율
2022	563,976	412,913	88,056	5,452	57,554	13.9%
2021	547,787	444,681	56,606	3,940	42,558	9.6%
2020	432,792	347,371	41,351	4,874	39,200	11.3%

- 순세계잉여금은 세위에서 세출을 차감한 간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병사이월, 시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절신액으로 나눈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관리의 계획성과 적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전국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56%이며, 전년 기준으로 과천시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9.57%)이었습니다.
- 올해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56% 가까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13.9%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2022년도 과천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권고사항

- 과천시는 과천시식정보타운 준공에 따른 입주기업과 주민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이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서정을 높이기 위해 보식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이월사업 최소화 권고(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 현 황

당해연도 아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입	세출	이월액	전기 대비 증감율	새출 대비 비율
2022	705,278	533,660	93,285	58.3%	17.5%
2021	1,009,272	795,740	58,916	23.7%	7.4%
2020	1,113,576	750,982	47,636	11.7%	6.3%

- 당해연도에서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3,285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58.3%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전체 세출액 대비 17.5%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 연도에 설치 시행하는 경비인 계속비이월을 제외하여도 전체 세출액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명시이월	증감율	사고이월	증감율	계속비이월	증감율
2022	57,563	69.1%	14,547	40.8%	21,175	45.6%
2021	34,039	32.4%	10,333	122.0%	14,544	(15.8%)
2020	25,699	20.8%	4,655	34.6%	17,282	(3.5%)

- 당해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의 전기 대비 증감율이 69.1%로 가장 높으며, 명시이월비율이 높은 사업의 소관부서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 비율
공원농림과	16,936	2,583	13,460	79.5%
문화체육과	4,704	1,381	3,161	67.2%
안전총괄과	11,496	3,933	6,551	57.0%
교통과	11,321	4,503	6,313	55.8%
건설과	27,897	9,663	11,962	42.9%

□ 권고사항

-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50조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한 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행정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된 예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각 사업부서에서는 신진재정운영과 경기침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 이원사업에 대하여 신속 집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3.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열린민원과, 복지정책과)

□ 연 황

1) 자치행정과

지표	측정산식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관리직공무원 여성비율	(5급 상당 이상 여성 관리자 수 / 5급상당 이상 관리자수)*100	목표	20%	20%
		실지	24.4%	35.9%
		달성률(%)	122%	180%

- 관리직 여성비율은 21년에 24.4%를 달성했음에도 22년에도 동일하게 성과지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22년도 달성률은 180%에 달하는 바 성과 지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표	측정산식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후생복지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수 / 전체 응답자수)*100	목표	35	35
		실적	59	60
		달성률(%)	169%	171%

- 후생복지만족도는 전년도 실적이 59%인에도 불구하고 22년에도 동일하게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22년 달성률은 171%에 달하는 바 성과 지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문화체육과

지표	측정산식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관람객 증가율(%)	(금년도 관람객 - 전년도 관람객) / 전년도 관 람객*100	목표	5	5
		실적	-	-
		달성률(%)	0%	0%

- 관람객 증가율은 전년도 관람객 대비 금년도 관람객 증가율로 계산합니다. 21년도에는 과천국제 미술제로 관람객이 없었기 때문에 관람객 증가율은 당해년도 관람객 수에 상관없이 달성률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도와 달성 노력을 성실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에도 관성식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표	측정산식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문화관광해설 만족도(점)	{(매우만족*100)+(만족 *80)+(보통*60)+(불만 *40)+(매우불만*20)} / 응답자수	목표	-	60
		실적		90
		달성률(%)	0%	150%

-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표시할 때는 최고점수 100점, 최저점수 0점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측정산식상 중간값이 60점으로 설정됨에 따라 만족도를 성향화시킬 수 있는 오류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 또한 ‘보통’ 점수인 60점으로 설정된 바 성과지표도 너무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3) 열린민원과

지표	측정산식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민원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이용건수 / 설문 응답률)*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
		달성률(%)	100%	0%

- 이용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측정산식은 이용건수를 설문응답률로 나누는 등 산출근거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4) 복지정책과

지표	측정산식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신혼부부 지원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 수 / 전체 응 답자 수)*100	목표	90	93
		실적	91	108
		달성률(%)	101%	116%

- 전체 응답자 수 대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없음에도 108%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만족도 측정산식을 수립할 때 예산 기준인시, 응답자 수 기준인시 명확하게 표시하여 올바르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 권고사항

- 202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목표설정치 미흡하였거나 산식이 잘못되어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합니다. 성과지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정하되, 지표 설정시 목표달성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권고합니다.

4. 민간보조금 관리

(1) 과천시 민간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필요(기획홍보담당관)

□ 관련법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이하 “보조금 관리기준”이라 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료, 원고료, 출장 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보조금 관리기준에 심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과천시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두어 지방보조금의 세부적인 집행기준과 교부조건을 관리하여 왔으며 현업 부서에 이를 배포해 사용하도록 해왔으나 2018년 이후 관리기준을 개정하지 않았고 원입부서에 배포하지 않고 있어서 보조금 담당 부처에서는 혼선이 있는데, 특히 식대, 회의비, 출동비, 수당, 숙박, 차량유지비 등의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권고사항

- 보조금 총괄부서에서 과천시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회의비, 식비, 장의료, 사무관리비 등의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 보조사업 관리부처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 세부 사업계획서의 예산의 작성에 있어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향후 보조사업 집행 시 명확한 시전 지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요재산의 관리(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 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상 물품 및 지정 기준을 고시하여야 하며,
- ②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③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 현황도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과천시는 민간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으며
-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이 있는 단체에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단체 외에 차량운행일지 제출이 되지 않았다. 특히 000은 기준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의 차량운행일지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규 차량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있다.
- 과천시는 매년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부동산, 차량, 노트북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명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권고사항

- 과천시는 중요재산 목록을 고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을 어느 단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 공모 관리 및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중(기획홍보담당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 7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해야 하나, “그 신청시기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 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민간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과천시에는 수백여 개의 민간단체가 있으나 특정 민간단체에 보조사업과 예산이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
-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그 신청시기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지정사업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 공모사업의 경우에 특정단체가 해오던 특정사업을 주체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정단체 외에는 공모신청자가 없어 단독으로 사업자로 선정되고 있어서 사업 공모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뿐, 사업 공모의 효과가 없다.
- 특히 시례성 사업의 경우, 참가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단체 내부에서만 모집해 진행하여 단체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단순한 1회성 행사인 경우가 있으며 지출내역의 대부분이 식비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 과천시는 2018년 1월 11일 과천시 대강당에서 “과천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한 시민들에게 공모사업 안내 책자를 배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았다.

□ 권고사항

- 광보에서 제외하여 국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 사업이 특정단체가 아니던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며,
- 시해청 사업의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 공모사업의 주제를 기존에 해왔던 특정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사업 제안이 가능하도록 연이남하여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공모로 진행하는 것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보조금 성과평가 보완(기획홍보담당관)

□ 관련법령

- 지방보조금법 제 27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정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163개의 사업 중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129개,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은 34개였으며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없었으며,
-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10개 사업 모두 “우수”와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없어서 성과평가의 결과가 이후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현재의 성과지표는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외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 권고사항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성과지표를 다양화하여야 하는데, 본행적으로 반복해 실행하는 사업이나 단순한 1회성 행사, 해당 단계의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행사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업비 지출에 대한 평가, 즉, 사업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판매 단체 이용 비용 (지역경제 활성화), 직역중방 사용 비용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간과로 “중단” 사업이 도출되기도 해야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익음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두도록 하고 이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보조금 지출 관리(기획홍보담당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저액이체의 경우 현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사로, 인건비, 뭉고료 등 수당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단체(XX), (XX), (XX 등)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 ① 현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②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로 하지 않은 경우,
 - ③ 회의 수당이나 식대 지급 시 회의록이 없거나 참석자 명단과 참석자 서명이 없는 경우,
 - ④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선 지출 후 계좌 이체한 경우 등
- 000의 경우, 이 외에도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차량운영비용 보조금 세화가 아닌 별도 계정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티 단체나 개인의 정주사에 화환 등을 보내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사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참석수당 등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지명계약만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 건도 있었다.
- XX의 경우, 보조금 외부 전 하점부 사업계획서 상 예산 편성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지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세부 지출의 확인에 있어 지출의 목적과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향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권고사항

- 사진에 교역 등은 통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칭을 안내한 필요가 있으며
- 보조금 규모 및 확정되는 최종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지출의 목적과 내역을 명확하게 하아야 한다.

(6) 자기부담금(자부담)의 관리(자치행정과)

□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민간단체의 자부담의 집행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보다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 담당자는 보조금을 교부 전에 통장사본을 제출받아서 자부담 여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은 경우, 중 집행액율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단체(acc, 000, 000 등)의 경우 보조금 위급 전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자 않고 있으며
- 보조사업 생산 시 자부담 집행비용이 사업계획서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을 반환하도록 해야 하니 정산 및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pno, 000)

□ 권고사항

- 자부담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부담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보조금 교부 전 농가에 자부담이 예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자부담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 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차이 금액을 정산 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 권고사항

- C. 지방보조금법 제 18조에 의하면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감사글 받은 보고서들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인 경우 2022년 기준, 000와 000기 이에 적당하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5. 민간위탁금 관리

(1) 수탁자 의무 관리(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 관련법령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18조에는 수탁기관이 따라야 할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①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징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 ②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수탁사무의 주요사업계획이나 시설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⑤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은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수탁사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무편람을 작성·비지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기술수준, 책임능력과 공신력,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이란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일반 용역 사무에 비하여 수탁기관에 권한과 의무가 상하게 부여되나,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일반 용역 사무의 집행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 과천시 000위 000 등의 경우,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이 아닌 일반 용역 사무로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고용승계나 정산의무 등 수탁자의 각종 의무사항이 간과될 수 있다.
- 또한, 담당부서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대신 계약단 내의 직속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간도 1년으로 매년 업차가 변경될 수 있다.

□ 권고사항

- 민간위탁의 관리에 있어 개별 법령에 다르게 규정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위탁 조례를 따라야 하므로 일반 용역 계약방식이 아닌 민간 위탁 계약방식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수탁자와 위수탁위약서를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담당자는 의사업부에 맞는 권리를 해야 한다.
- ooo와 xxx의 경우 일회성 사무이거나 단순 반복적 사무라기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따라서 수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업제가 변경될 수 있는 경쟁입찰 계약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위탁 성과평가(자치행정과)

□ 관련법령

- 민간의탁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시정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시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파천시는 민간위탁에 대해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위탁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 지표가 있어야 하나 성과지표도 없는 상태이다.

□ 권고사항

- 민간위탁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하며, 필요 시 초기에는 외부 기관에 성과지표 개발을 포함한 성과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IV.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용

시정 및 전의사항	
1. 기부채납토지의 적절한 관리 및 개선 권고 □ 현 황 ○ 1단지 기부채납 주지장의 경우 관리전환은 완료되었으나 건물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음. ※ 우수사례(도시정비과, 공원농림과) : 전년도 기부채납토지의 적절한 관리 개선 권고에 따라 당해년도 도시정비과에서는 수송6단지 준공 전 관리전환 통지를 하였고, 공원농림과에서도 2022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도시서비스 개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 권고사항 ○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림.	
조치결과	관련부서
○ 2022년 2월 도시정비과에서 교통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및 2022년 11월 주차장 개빙하였음	교통과

2. 단위사업 예산편성 개선 권고

□ 현 황

- 상위농림과 단위사업인 동물보호관리에는 세부사업이 반터전 간이논이터 조성 사업밖에 없으나 축산진흥(단위사업)의 세부사업에는 야생동물 구조치료, 유기동물 보호관리, 싼고양이 급식소 지원 등 축산진흥과 크게 관련이 없는 세부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음. 또한 예산도 동물보호관리 전체 예산이 10백만원인데 비하여 야생동물구조치료 34백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96백만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29백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10백만원, 동물보호 12백만원으로 계정간의 불균형이 심함.

□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에 맞게 계정 간의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기 바람.

조치전과	관련부서
○ 단위사업에 맞게 계정간의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편성 하였음. ○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환경과 단위사업을 동물보호관리사업, 축산진흥사업 2건으로 분류하여 동물보호관리사업 예산 268백만원, 축산진흥사업 예산 310백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	기획홍보 담당관 기후환경과

시정 및 권의사항

3. 학교급식 관련 예산의 통합지원 권고(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공원농림과)

□ 현 황

- 급식 관련 예산 중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 공급은 공원농림과 농업화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교우유급식은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또한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 및 예산의 통합식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고사항

- 여러 부서에 산재된 급식 관련 예산을 부서 간 협의 과정을 통해 통합할 필요가 있음.

조치결과	권리부서
○ 급식 관련 예산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게 해당 부서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단,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발려 주토하겠음.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포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일반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각 학교별 신청에 따라 교육청·도시군의 분담비율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사업임. 농산물이나 과일, 우유급식과 같이 현물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예산 사업으로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됨	기획홍보 담당관 지역경제과 교육정책과 기후환경과

4. 계속비 사업의 세부사업 구분 관리 및 이월회계 처리 개선 권고(기획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 현황 및 실태

- 안전총괄과 계속비 이월사업인 뒷골전 소화전 정비공사 사업은 총 2,066,259천원의 사업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2019년에서 2021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이나 전년도 통합집산서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고, 2021년 본예산은 147,752천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32,409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15,343천원임. 실제 준공은 2020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지출액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임. 소화전 정비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는 150,000천원에 불과하나 사기막골 소화전 정비공사 당시이월액 1,223,530천원, 뒷골전 계속비이월액 147,752천원, 배령이진 소화전 정비공사 당시이월액 52,312천원, 용마골 보행공간 조성공사 520,000천원으로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확인하기 어려움. 이처럼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과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사업별 당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의 사후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전년도 동일 지적사항)

□ 권고사항

- 소화전별로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바람.

조치결과	관련부서
○ 이월사업의 이월사유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예산 편성 시 소화전정비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위정하였음	기획홍보담당관 공원주석과